

【연구논문】

한미관계의 국제정치적 현실과 국제규범의 긴장: 한국전쟁시기 미군의 공중폭격과 민간인 보호의 갈등사례

황지환

(서울시립대)

1. 서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53년 맺어진 정전협정에 의해 한반도는 현재 휴전상태에 있지만 전쟁은 종결되지 못하였고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히 높고,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이 강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민간인 집단희생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늘 규범과 현실사이에서 긴장이 존재한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동맹관계의 국제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제규범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측면이 한미관계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10년 활동을 종료하며 총 4권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 그 중 제 3권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군의 공중폭격, 지상군 총격, 함포사격 등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과 관련된 문제의 조사와 처리를 정리한 내용이 제 4장에 보고되어 있다.²⁾ 전쟁당시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친 사례가 발굴되고 그 책임구명과 배상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의해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만족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³⁾ 물론 이러한 사건의 책임구명과 처리에 대해 쉽지 않은 점이 있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사건들의 대부분이 북한의 남침 직후부터 낙동강방어선 형성 시기, 인천상륙작전 기간과 중국군의 개입과 함께 1·4 후퇴가 진행되는 기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초기 한국군이 패배하면서 전쟁 수행의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패배로 인한 국가존망의 위기상황에서 많은 전쟁수행 상의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공중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한 단순히 국제법적인 측면에만 주목하게 되면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응을 양산하게 된다. 반면, 국제정치적 측면에만 주목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방안마련이 어렵게 된다. 전시민간인 보호라는 규범적 기준과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정책 사이에서 국가의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해석과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공중폭격을 단순히 전쟁범죄나 국제법 위반 혹은 군사작전의 부수적

-
-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종합보고서 I~IV』전 4권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10).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10).
 - 3) 진실화해위원회의 종합권고는 제I권에서 제안되어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위원회의 연혁과 활동, 종합권고』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10).

피해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분석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한국전쟁 당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범을 살펴보고 군사적 필요성과의 긴장과 갈등을 분석한다.

2. 한미관계와 국제규범: 전시 민간인 보호 규범

국제사회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비전투원(non-combatant)인 민간인들(civilians)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규범들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국제규범들은 한미관계에서도 예외일수는 없다. 1907년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나, 1949년 8월 12일 채택되고 1950년 10월 12일 발효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4협약) 및 1977년의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관한 제1 추가의정서”는 전시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규정한 대표적 국제인도법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⁴⁾ 또한 구속력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1923년 헤이그 공전법규(空戰法規)”는 군사적 목적이 없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위한 공중폭격은 금지되며, 공중폭격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인근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indiscriminate)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격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1996년 “국가들이 민간인을 공격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⁶⁾ 하지만, 전쟁의 교전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민간인

4) 조시현,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7 (2008).

5) 이재곤, 정구도, 오윤석,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한국전쟁 시 소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민간인 살상사건’과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10.1 (1999): 129-130.

6) Yoram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15.

의 살상이 발생한 경우와 더불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전쟁목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그동안 상당수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전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 및 전쟁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전쟁법규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⁸⁾

특히 헤이그 협약의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이라고 불리는 전문은 “보다 완비된 전쟁법규에 관한 법전이 제정되기에 이르기까지는 체결국은 그 채택된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 및 교전자가 문명국 간에 존재하는 관습,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오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 및 지배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선언하였다.⁹⁾ 이처럼 ‘마르텐스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시 민간인에 대한 살해 행위나 불필요한 공격 행위가 금지된다는 인도적 원칙은 이미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최소한의 인도적 기준’(minimum humanitarian standards)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1949년 제네바 협약이 채택될 당시 참가국들에 의해 이미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소위 ‘축소조약’(Convention in miniature)로 알려져 왔다.¹⁰⁾

국제관습법규로 형성되어 확립된 원칙들로는 몇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전시에 교전자들이 군사전략상의 필요에 의해 작전을 수행하며 무제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 무기를 버리거나 또는 자위수단이 없이 투항하는 적의 살상금지과 같은 ‘인도주의 원칙’, 불명예스러운 수단과 방법 및 행위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정당당하게 교전하는 ‘기사도의 원칙’,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의 원칙’, ‘비례

7) Sahr Conway-Lanz, *Collateral Damage: Americans, Noncombatant Immunity, and Atrocity after World War II* (London: Routledge, 2006).

8) 이재곤, 정구도, 오윤석,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124.

9) 김정건 외, 『국제조약집』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867.

10) 조시현,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성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지 않을 의무 등을 나열할 수 있다.¹¹⁾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공중폭격의 사례에서도 헤이그 법에 의해 발전되어 온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 '비례의 원칙,' '구별의 원칙' 등 제네바협약상의 국제관습법화한 인도주의적 기본원칙의 준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¹²⁾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보호 관련 논의에서는 특히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커다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제인도법적 보호에 관한 관심은 무력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사적 목적에 합당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소위 '군사적 필요성'(military necessity)과 '비례'(proportionality)의 원칙을 동시에 발전시켜 왔다.¹³⁾ 하지만, 전시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국제규범과 현실 국제정치적, 군사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¹⁴⁾ 이는 한국전쟁시기 미군의 공중폭격과 민간인 보호 문제를 대하는 한미의 대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한미관계와 국제정치적 현실: 전시 민간인 보호와 군사적 필요성

1)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전략적으로 꼭

11) 이장희, 「전시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근현대사강좌』 12 (2001): 304-307; 이재곤, 정구도,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19.2 (2008): 267; 이재곤, 정구도, 오윤석,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112.

12) 이재곤, 정구도,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270; 조시현,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이장희, 「전시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318-319.

13) 이재곤, 정구도, 오윤석,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112-113.

14)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16-20.

필요한 것은 공격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폭격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경우 적의 작전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목표를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법상 교전자는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 및 희생으로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¹⁵⁾ 물론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들은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과 동시에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금지하고 군사적 필요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고통(unnecessary or superfluous suffering)을 주는 살상이나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¹⁶⁾

반면, ‘비례’의 원칙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파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와 희생사이에 합리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파괴의 효과에 비해 희생이 크다면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따라서 군사목표물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인접한 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은 직접적인 의도가 있을 때 뿐 만 아니라, 무차별적인(indiscriminate) 것일 때도 금지된다. 전술하였듯이 이는 “1923년 헤이그 공전법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금지된다는 것은 설령 민간인에 대한 공격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공격자의 무관심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군사목표물에 대한 적법한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공격상의 과실로 인해 인근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폭격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더구나 2차 대전 당시 그랬던 것처럼 적의 민간인을 공격하여 적의 전쟁의지를 꺾으려는 것을 군사적

15)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4th edition (Cambridge Univ. Press, 2005), 237.

16) Stefan Oeter, “Methods and Means of Warfare,” *The Handbook of 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 ed. Fleck Diet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05, 109. 조시현,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법적 성격」에서 재인용.

17)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119-123;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237-242.

목표로 삼는 작전은 현대 국제법상 용인될 수 없다.¹⁸⁾ 따라서 군사적 필요와 비례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전시 국제인도법 적용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군사적 필요성’과 ‘부수적 피해’

전시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간의 긴장관계는 민간인 보호와 관련하여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에 관한 검토를 필요하게 한다. 전시의 적법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부수적 피해로서의 민간인 집단희생이 발생했는지 혹은 군사적 필요성만 강조하고 비례의 원칙을 외면함으로써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당시의 정확한 군사적 필요성을 평가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자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군사적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실제 정치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민간인 피해에 관한 한 군사적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⁹⁾

‘부수적 피해’는 무력사용이 군사전략적인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의도는 없었지만, 군사목표물과 인근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²⁰⁾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민간인을 직접 공격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며,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의도적인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에는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로마

18)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116.

19) Conway-Lanz, *Collateral Damage*, 227.

20)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115-116, 123-125, 129.

규정(Rome Statute)은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의도적인 공격을 전쟁범죄(war crime)로 규정하고 있다.²¹⁾ 하지만, 전투원과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그 근처의 민간인 희생자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의도되지 않았을 경우 (unintended or inadvertent),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제법적인 위반이나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규모의 공중폭격이 수행되어 적의 군사시설과 목표물을 광범위하게 파괴시키려 한 경우 민간인을 공포에 빠뜨리고 적의 전의를 꺾을 수 있지만, 이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가령 2003년 이라크에서 행해진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은 군사적 목표를 타격하고 적군의 후방을 분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적인 위반은 논의될 수 없다는 해석이 있다.²²⁾

다른 한편, 부수적 피해의 관점에서 볼 때, 군사적 목표물에 들어가거나 군대와 동행하는 민간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민간인들이 군사 목표물 근처에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경우에도 보호가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격이 발생한다면 ‘적법한 부수적 피해(legitimate collateral damage)’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977년의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관한 제1 추가의정서”는 적국의 공격에 대비하여 소위 ‘소극적 경계(passive precautions)’라고 불리는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²³⁾ 교전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적국에 대비하여 1)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군사목표물로부터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2) 인구밀집지역에 군사 목표물을 두는 것을 회피하고, 3) 군사작전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으로부터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국의 적법한 공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피해를 방지하

21) *ibid.*, 115, 230-232.

22) *ibid.*, 116.

23) *ibid.*, 129-130.

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부수적 피해’와 ‘비례’의 원칙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 피해’의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은 적용된다.²⁴⁾ 과거에는 공격이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 이루어졌을 경우 민간인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피해의 경우 보통 부수적 피해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²⁵⁾ 하지만, 이는 현대 국제분쟁법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 피해가 공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1977년의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관한 제1 추가의정서”는 “비례하지 않는(disproportion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과도한(excessi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은 그러한 비례하지 않는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4) 전시 민간인 보호와 군사적 필요성의 긴장

결국 전시 민간인 보호 규범과 군사전략적 필요사이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긴장관계가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에서도 ‘노근리 사건’과 같은 다수의 미군 공중폭격이 이루어져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례가 발굴되고 그 책임규명과 배상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²⁶⁾ 일반적으로 공격을 받은 전쟁의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예

24) *ibid.*, 59, 94.

25) *ibid.*, 119-120.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U.S. Department of the Army, *No Gun Ri Review* (Seoul: Korea 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2001). (노근리 사건 미국 측 최종보고서); Sahr Conway-Lanz, “Beyond No Gun Ri: Refugees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in the Korean War,” *Diplomatic History* 29.1 (2005);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외적이고 극단적인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전략적으로 필요한 군사적 목표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경우 인근의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의 경우 공격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전쟁의 경우에도 북한의 남침으로 전세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에서 대규모의 공중폭격이 이루어진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위법여부와 책임문제 규명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여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 원칙의 균형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사실규명의 문제점과 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제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사전략적으로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현실 국제정치적 이유로 민간인의 희생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국제법상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도 국제법상 위법성은 면제되더라도 무고한 민간인의 집단희생에 대한 국제여론 및 정치적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용단폭격과 같은 ‘전략폭격’(strategic bombing)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²⁷⁾ 한국전쟁 당시의 미군폭격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는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당시의 국제정치 및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단순히 국제법적인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현실적인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이 낮은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반면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당시의 국제정치적 측면만 주목하다 보면, 억울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방안 마련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전 시민간인 보호라는 규범적 기준과 군사전략적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8.

27) Conway-Lanz, *Collateral Damage*, 221-220.

사이에서 균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과 같은 미국의 여타 전쟁의 사례들은 국제인도법상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 희생의 적법 및 위법 여부를 판단해 왔다. 하지만, 역시 정보부족과 군사기술상의 이유로 국제법상 적법/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며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을 판단함에 있어 대부분의 공중폭격이 이루어진 1950년 여름에서 1951년 봄까지의 전투상황과 당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 국제법의 위반여부나 부수적 피해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제규범과 국제정치적 현실의 긴장: 국제사회의 공중폭격 규제노력과 현실적 제약

1)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한계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 왔으며,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전쟁의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국제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²⁹⁾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사회는 국제분쟁과 전쟁 관한 국제법을 발전시켜 왔으나, 국제법은 국내법과는 달리 주권국가들의 관계라는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 제한적인 적용을 수행해 왔다. 국제법의 현실적 제약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이 국제사회에서 법으로서의 기능을 국내사회에서처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제약과 국제사회가 이를 위한 조직화와 체계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의 결과이다.³⁰⁾ 현대사회에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근본

28) 국방부, 『한국전쟁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29)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New York: Basic Books, 1977); 마이클 왈저, 『전쟁과 정의』, 유희림 외 역 (서울: 인간사랑, 2009).

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만 그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대 국제사회가 국가들의 주권평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국내사회처럼 합법적인 통제력과 강제력을 보유한 최고의 권위(highest authority)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 무정부질서(international anarchy)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법의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이해할만하다.³¹⁾

하지만, 법이 규범의 하나로서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되는 점은 그 강제성을 보장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국제법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강제성이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국제법은 무정부질서인 현실 국제사회의 권력정치(power politics)적 속성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제법의 규범성은 인정하더라도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적용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제법의 실효성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정치권력과 국제정치에 의해 실현된다. 국제법은 공동의 국제법 규범의식을 가진 경우에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제약이 있게 된다.³²⁾ 특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전쟁법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 글이 논의하고 있는 국제인도법의 전시 민간인 보호 규범 역시 국제법의 이러한 한계 속에서 존재하며,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이처럼 항상 국제법의 규범적 원칙과 적용의 현실 속에서 긴장관계가 형성되곤 한다.

30)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2), 29.

31)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32) 이한기, 『국제법강의』, 44-45.

2) 미군의 공중폭격 규제노력과 현실적 제약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항공기의 공중폭격의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물론 1차 세계대전에서 공중폭격이 등장하면서 그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후 전략폭격(strategic bombing)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적의 전쟁수행능력과 전쟁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적 점령하의 주요 도시나 생산시설, 교통 및 통신시설, 정치적, 군사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현대 공군의 폭격작전이 시작되었다.³³⁾

제 2차 세계대전 초기 미국은 군사적인 목적에서나 민간인 보호라는 정치적 혹은 국제법적 측면에서나 전략폭격보다는 정밀폭격(precision bombing)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³⁴⁾ 하지만, 전황이 긴박해지면서 미국은 특히 태평양지역에서 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공중폭격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정치적 부담과 국제법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질서속에서 국가들이 충돌하는 현실 전쟁에서는 전략폭격이 광범위하게 수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폭격의 목표지점이 방공망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때 폭격기들은 가능한 한 높은 고도에서 안전하게 폭격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정밀유도무기(precision-guided munitions)나 스마트 폭탄(smart weapons)이 없는 경우에는 폭격의 정확성을 포기하더라도 조정사의 안전을 고려하여 정밀폭격보다는 높은 고도에서 공중폭격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2차 대전 당시의 대체적 경향은 집중폭격(saturation bombings)이었는데, 이는 민간인 목표뿐 아니라 군사적 목표물이 밀집되어 있는 넓은 목표지역에 대한 공중폭격이었다. 이는 집중적인 정밀폭격보다는 군사적 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폭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부수적 피해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

33)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24-28; Conway-Lanz, *Collateral Damage*, 1-22.

34)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32-35.

를 양산하면서 2차대전 이후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1977년의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관한 제1 추가의정서”는 목표지역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목표지역에 대한 공습은 군사적 목표물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거나 구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³⁵⁾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공중폭격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5. 국제규범과 국제정치적 현실의 긴장 사례

1) 민간인을 공격하여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의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면서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이탄 투하작전을 수행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러한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중 폭격양상은 이후 국제사회 뿐 아니라 미국 국내사회에서도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³⁶⁾ 이러한 2차 대전의 전략 폭격은 적의 군사적 의지를 분쇄하려는 의도로 광범위한 지역의 집중폭격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차 대전 당시 그랬던 것처럼 적의 민간인을 공격하여 적의 전쟁의지를 꺾으려는 군사적 목표를 위한 작전은 현대 국제법상 용인될 수 없다.

2)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의도되지 않았을 경우(unintended or inadvertent), 국제법 위반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의도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인 피해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문제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제법적인 위반의

35)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110-112.

36)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i-iv.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해석되어 왔다. 이는 유럽의 코소보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코소보의 군사작전에서 대규모의 공중폭격을 통해 적의 군사시설과 목표물을 광범위하게 파괴시키려고 의도했다. 이러한 공중폭격은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많은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면서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하기는 했지만 이를 대체로 국제법 위반 혹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³⁷⁾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군의 대규모 공중폭격이 감행되어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있었지만, 그 공격이 군사적 목표를 타격하고 적군의 후방을 분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되어 민간인 피해가 국제인도법적인 위반으로 해석되지는 않았다.³⁸⁾

3)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indiscriminate) 폭격은 국제법 위반이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군사목표물에 대한 적법한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공격상의 과실로 인해 인근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폭격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인접한 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1년 걸프전쟁(Gulf War) 당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대체적으로 민간인 희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미군의 공습이 민간인의 공습대피소로 사용되는 병커를 공격하여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미국은 그 병커가 이라크군의 작전지휘부로 사용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것이 민간인의 대피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이러한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 병커는 군사적 목표물로서 적법한 대상이었다고 해석되곤 했다.³⁹⁾

37) Dinstein,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116.

38) *ibid.*, 116.

39) *ibid.*, 118.

반면 미사일의 경우 그 특성상 특정한 군사적 목표물을 겨냥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대도시 지역을 겨냥하게 되는데, 이는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을 위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1년 이라크의 스킨드 미사일이 이스라엘 텔 아비브의 인구밀집지역을 향해 발사된 것은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당시 스킨드 미사일이 도시의 민간인이 아닌 군사적 목표물을 가격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4)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중폭격이 군사적 목표에 대한 적법한 공격으로 의도되었더라도 군사 장비의 오작동이나 날씨의 변화, 잘못된 정보 혹은 조종사의 실수로 오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1999년 코소보 공습 당시 폭격기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폭격을 수행했다. 당시 시계를 확보하는 정밀한 기술이 있었지만, 조종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높은 고도에서 폭격을 하여 민간인 차량과 군사용 차량을 혼동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공습의 경우에도 폭격장비가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습이 군사적 목표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거의 매일 오폭사고가 보고되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다른 두 지역에 있던 적십자 본부에 대한 오폭까지 발생한 적이 있었다.⁴⁰⁾ 이러한 경우에도 부수적 피해의 경우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40) *ibid.*, 119.

6. 한국전쟁 시기에 대한 가설적 판단기준의 검토

한국전쟁시기 미군 폭격사건에 대한 판단은 국제법상의 ‘군사적 필요성’, ‘비례’의 원칙 및 ‘부수적 피해’ 등의 시각과 더불어 당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전략적 상황이라는 국제정치적 시각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가설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면밀한 사실검토를 통해 국제법적 위반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 위반의 경우 전쟁범죄(war crime)를 구성하는 경우와 기타 국제법을 침해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고 그 종합권고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추후 대응과정에서 이러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모든 교전국은 전쟁 중 자국 군대의 행동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쟁법에 대한 모든 위반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쟁범죄와 국제법 혹은 전쟁법 위반(unlawful combatancy)을 구별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1949년 제네바 협정 규정의 중대한 위반(grave breaches)인 경우 전쟁범죄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소 광범위한 규정이며, 상당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로마규정(Rome Statute)은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의도적인 공격은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⁴¹⁾ 따라서 한국전쟁시기 미군의 공중폭격 및 민간인 보호를 다루는 한미관계의 관점에서도 전시민간인 보호라는 규범적 차원과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수적 피해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1) *ibid.*, 230-232.

22 항지환

- a) 전쟁범죄와 민간인 학살: 의도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희생을 의도한 경우
- b) 국제법 위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공중폭격을 했지만,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아 국제법의 위반인 경우
- c) 부수적 피해: 군사적 필요성과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공중폭격을 수행하여 국제법 위반은 아니지만, 부수적 피해로서 민간인의 희생이 발생한 경우

a), b)의 경우 국제정치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법적 책임구명과 배상문제가 요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한국전쟁시기 다양한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 책임구명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미국에 의해 법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c)의 부수적 피해의 경우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분명한 것은 적법한 군사 활동이더라도 역시 무고한 민간인의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및 정책제언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 사건들의 쟁점을 이해하고, 해결방안과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함께 전쟁 관련 국제법, 타국의 사례 등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과 그 후속조치들을 통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⁴²⁾ 더불어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구체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의 성격과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여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국제규범적,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과 미군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의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전쟁터의 전투 상황에 대한 세밀하고 미시적 분석을 한국전쟁이 갖는 국제정치적 성격과 같은 거시적 차원과 밀접한 연관 하에서 진행할 때 민간인 희생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 해결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민간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한국정부가 취하는 대안을 권고할 수 있다. 보상이란 국가가 적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있어서 보상은 국가의 정당한 업무 수행 상 발생한 부수적 피해에 대한 배려 차원이고, 배상은 국민에게 저지른 위법한 국가 범죄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군경 등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문제가 된다. 국가는 불행한 사건의 발생원인과 배경을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회복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를 정리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민적 화해를 지향하는 원칙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피해회복이라고 할 때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치료와 지속적인 보살핌이 일차적 과제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정신적 상흔, 트라우마, 통비분자나 간첩이라는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권고를 통해 이러한 어느 정도 논의된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을 권고함에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에 입힌 미국에

의한 공습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입은 피해는 당연히 일본국 정부가 국가보상에 의해서 구제할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였다. 재판의 목적이 희생자의 처참한 체험을 말하고, 국가에 대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차별을 고쳐서 법의 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희생자의 추도, 사죄 및 배상을 실행시키는 것이었으므로 국가에 의한 보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이자 적국인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침략국인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파생된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전쟁의 민간인 피해사례들의 각 사안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입법청원들을 통한 국회의 향후 입법조치로 국내적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의 사례들이 다양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국제법적 쟁점을 고려하고,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주변 상황과 한미관계 등 현실 국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사안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적절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의해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조치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규범과 국제정치 현실 사이에서의 긴장 속에서도 한미가 건전한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Works Cited

국방부. 『한국전쟁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노근리 사건 미측 최종보고서』.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정건 외. 『국제조약집』.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8. 마이클 왈저. 『전쟁과 정의』. 유희림 외 역. 서울: 인간사랑, 2009.

백종천·윤종원. 「6·25전쟁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28 (1991).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서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서울: 집문당, 2001.

이장희. 「전시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근현대사강좌』 12 (2001).

이재곤·정구도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19.2 (2008).

이재곤·정구도·오윤석.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한국전쟁시 소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민간인 살상사건'과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10.1 (1999).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2.

조시현.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7 (2008).

존 린. 『배틀, 전쟁의 문화사』. 이내주 외 역. 부천: 청어람미디어, 20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서울: 동 위원회, 2005.

_____. 『2008년 조사보고서 제2권』. 서울: 동 위원회, 2008.

_____. 『2008년 상반기조사보고서 제4권』. 서울: 동 위원회, 2008.

_____. 『2008년 하반기조사보고서』. 서울: 동 위원회, 2008.

_____. 『2009년 하반기조사보고서』. 서울: 동 위원회, 2009.

_____.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위원회의 연혁과 활동, 종합권고』. 서울: 동 위원회, 2010.

_____.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서울: 동 위원회, 2010.

케이스 힐리. 『B-29의 일본폭격』. 한국일보라이프타임 편집부 역. 서울: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87.

Conway-Lanz, Sahr. *Collateral Damage: Americans, Noncombatant Immunity, and Atrocity after World War II*. London: Routledge, 2006.

_____. "Beyond No Gun Ri: Refugees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in the Korean War." *Diplomatic History* 29.1 (2005).

Dinstein, Yoram. *The Conduct of Hostilitie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_____.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5.

Oeter, Stefan. "Methods and Means of Warfare." *The Handbook of 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 Ed. Fleck Diet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Stephens, Dale and M. W. Lewis. "The Law of Armed Conflict: A Contemporary Critique."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 (2005).

U.S. Department of the Army. *No Gun Ri Review*. Seoul: Korea Institute of Military History, 2001. (노근리 사건 미국 측 최종보고서)

■ 논문 투고일자: 2014. 03.04

■ 심사(수정)일자: 2014. 06.16

■ 게재 확정일자: 2014. 06.23

Abstract

**The ROK-US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Air Strikes and Civilian Protection in the Korean War**

Jihwan Hwang

(University of Seoul)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resolving the issue of civilian sacrifices by U.S. military strike during the Korean War. It is ineffective if it focuses o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problematic if it pays attention only to the asp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cause it makes it difficult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sacrificed people. In fact, there is serious tension between civilian protection and military necessity during the wartime. It is very difficult to declare that air strikes are war crimes or th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t is also difficult to say that it is just a collateral damage of military operation. In this sense, this paper explains the issue of civilian protection and the tens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military necessity during the Korean War.

Key Words

ROK-US Relations(한미관계), the Korean War(한국전쟁), International Law(국제규범), International Politics(국제정치), Civilian Protection(민간인 보호), Military Necessity(군사적 필요성)